

# 해양·수산관련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 1.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호, 2011. 01. 07
  -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전저항 산정 시 필요한 저항계수 산출 수식 오류 수정함
  - 닻의 수중중량 산출 산식 및 닻쇠사슬 파지력 계수 오류 수정함

## 2.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10호, 2011. 01. 11
  - 항행예정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입석으로 승선인원 산정 가능토록 함(「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마목과 일치시킴)
  - 도선사용 사다리 규격을 「선박용물건 형식 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IMO Res.A. 889(21) 및 KS V ISO 799(도선사용사다리 KS 표준) 규정과 일치시킴

##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 ▣ 대통령령 제22624호, 2011. 01. 17
  - 유·도선사업자와 종사자가 출항 전에 승객에게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등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유·도선사업자가 인명구조요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며, 내수면을 운항하는 유·도선에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장비를 갖추도록 함

## 4. 연근해어선의 어업허가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 제정

-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250, 2011. 01. 18
  - 피대체어선의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 기존의 노후한 어선을 폐선시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폐선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함

## 5.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정

- ▣ 대통령령 제22664호, 2011. 02. 09
  - 법률의 적용 제외 또는 완화 적용 범위
    -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없도록 건조된 선박, 군함, 경찰용 선박 및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선박 등은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형 선박 및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 선박 등에 대해서는 법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 선박평형수처리업의 설비 및 시설
    - 선박평형수처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저장시설, 처리설비 및 운송수단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적정하게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방법 및 요건
    -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선박의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행협정 체결을 신청하도록 하되, 관련 조직 및 검사원 등을 갖추도록 하고, 대행협정에는

대행업무의 범위, 손해배상책임, 협정해지요건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원 및 형식 승인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선박평형수 관련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6. 어선안전공간 확대 등을 위한 검사지침 일부개정

### ▣ 농림수산물식품부 어업정책과 - 566, 2011. 02. 10

- 지침 제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변칙적 증톤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지침 적용 제외어선 신설
  - 상갑판 아래 선미부(기관실 후단 격벽으로부터 선미외판까지의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부 또는 일부용적을 선미부이외의 다른 부분의 용적으로 전용한 어선
  - 제2호 가목 1) 및 2)에 해당하는 공간(이하 “조타실등”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던 용적을 다른 부분의 용적으로 전용한 어선
  - 정해진 허가어업 어선의 규모 이내로 어선의 총톤수를 감소시키고자 선미부 또는 조타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어선
- 어선원 복지공간을 증설하는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 검토 하여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

## 7. 특수화물 선박운송규칙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령 제331호, 2011. 02. 10

- 화물분진 등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화
  -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고체화물을 적재 및 하역 하기 위해서는 미립형태의 고체화물 또는

화물분진의 갑판기구나 거주구역으로의 유입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적재 및 하역작업 중 갑판기구나 항해장비 및 선내에 화물분진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기기 및 장비에 덮개를 씌우거나 통풍구를 닫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함
- 고체화학위험물질 등의 운송 및 적재 시의 안전조치
  - 고체화물의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도록 밀폐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산소와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독성가스 및 인화성가스를 방출하는 화물의 경우 자연 통풍이나 기계통풍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고체화물의 분진에 대한 노출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흡구, 보호복, 피부보호제 등을 선박 안에 비치하도록 함
- 화물정보의 제공
  - 화물의 적절한 선적(船積)과 안전한 운송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위해서는 하송인(荷送人)이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화물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하송인은 고체화물을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선적 전에 해당 고체화물의 화학적 성질 등을 적은 자료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 고체화물을 선적하고 운송하는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사전에 고체화물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선적 및 운송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액상화물질의 시료채취 절차
  - 액상화물질을 선박에 적재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운송허용수분치 이상의 수분함량이 발생할 경우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액상화물질의 운송허용수분치 및 수분함량의 측정은 엄격한 시료채취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액상화물질의 수분측정을 위한 대표시료는 화물의 유형, 화물의 성분과 변이성, 화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만들도록 하고, 채취한 시료는 밀봉용기에 보관하며, 동결(凍結)된 화물의 시료는 수분이 완전히 녹은 후 수분 함량이나 운송허용수분치 측정을 위한 시험을 하도록 함

- 액상화물질의 선박 적재 및 운송과정에서 엄격한 시료 채취가 이루어져 액상화물질의 품질이나 특성의 변화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고체화학위험물질의 혼적운송 방법

- 고체화학위험물질을 혼적(混積)하여 운송하는 경우 운송 중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격리방법이 필요함
- 고체화학위험물질 중 상호반응성 물질은 동시에 적하 또는 양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성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물질은 거주구역이나 통풍구로 가스가 침입할 수 없는 화물 구역에 적재하도록 하며, 가연성물질은 냉각하거나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저준위방사성물질이나 표면오염물질 등 방사성물질을 운송한 화물구역은 오염을 제거할 때까지 다른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고체화학위험물질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혼적하여 운송 하도록 함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 선박에 산적되어 국가 간에 이동되는 폐기물은 운송 중 선박이나 관련 당사국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하는 자가 수출 국가를 통하여 폐기물 이동을 최종 목적 국가에 통보한 경우 및 폐기물이 안전하게 취급되거나 그 밖의 처리방법으로 안전하게 동의서를 접수하고 수출국가가 그 이동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

## 8.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 대통령령 제22668호, 2011. 02. 14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한정면허 제도의 도입

-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특성과 항공기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 작동원리도 다양하므로 작동방식을 한정하는 면허를 도입할 필요가 있고, 사업용과 비사업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건이 완화된 비사업용 한정면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 중 표면효과가 발생하는 높이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는 표면효과전용선 면허와 자가 운전 중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비사업용조종사면허 제도를 도입함

- 수면비행선박의 종류에 따라 조종사면허 취득 요건을 적절히 구분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제도의 조기 정착 및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시험방법 및 승무 경력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시험은 항해, 운용, 법규, 영어 및 수면비행선박공학에 대한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에는 4급

항해사, 4급 운항사 및 사업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등을,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의 경우에는 5급 항해사 및 자가용조종사 자격 이상으로서 일정기간의 승무경력 등을 각각 갖추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 수면비행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수면비행선박에 승무하는 선장이나 항해사 등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은 선장 및 1등 항해사 각 1명의 승선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 항해용 중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항행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승무하도록 하고, 국내 항해용 소형 수면비행선박의 연속 항행시간이 2시간 이내 이거나 충돌예방을 위한 장애물 탐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1등 항해사의 승무를 면제하도록 함
  - 수면비행선박의 승무기준 원칙을 정하고 연속 항행시간에 따라 적합한 최저승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면비행 선박의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9. 평형수(平衡水)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7호, 2011. 02. 15
  - 환경시험, 육상시험 등 형식승인 시험종류별 순서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
  - 활성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선박평형수 처리 설비에 대한 활성물질 생성여부 확인절차를 정함
  -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에 대한 국제해사기구 승인신청 절차를 정함
  - 방폭형 장치 및 적합성시험 사전평가에 대한

시험기준을 정함

- 선박평형수 처리설비의 검정기준을 국제공업 규격(ISO) 등에 맞게 개정함

## 10.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2호, 2011. 02. 16
  - 고체화물의 목록을 정함
    - 철광석, 석탄, 모래 등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는 301개 고체화물을 정함
    - 고체화물별의 선적명(BCSN)과 화물특성에 따른 그룹(A, B, C)을 정함
  - 고체화물의 개별일람표를 정함
    - 301개 각각의 고체화물에 대하여 품명, 명세, 특징, 유해성을 정함
    - 선박으로 안전한 운송을 위해 적재 및 격리, 화물창 청결, 기상 주의, 선적, 통풍, 운송, 양하, 청소 등 화물별로 운송요건을 정함

## 1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32호, 2011. 02. 18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신설함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정함
  - 해기사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
  -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해기사에 대한 면허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을 마련

## 12. 고속기관 등의 정비·점검 확인을 위한 지침 제정

- 국토해양부 예규 제2011-181호, 2011. 02. 21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3호바목4)에 따라, 고속기관 등 특수한 구조를 가진 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관제조자의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점검의 지속 여부 확인 방법 등 세부검사지침을 정함
- 기관의 개방검사 면제조건
  - 기관가동시간 초과여부, 정비지침에 따른 정비·점검계획 수립과 정비기록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상 시운전 결과 양호한 경우 면제토록 함
- 기관 가동시간의 확인방법
  - 기관 가동시간은 기관 또는 기관의 제어장치에 설치된 회전시간계로 확인하며, 항해일지 또는 기관일지를 참조하도록 규정함
- 인정 가능한 정비기록의 종류
  - 선박의 기관일지, 기관장 또는 담당기관사가 서명한 선내 정비·점검기록 또는, 정비수행자가 서명한 정비·점검 기록 등을 기관의 정비기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 대행검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 정비지침에 따라 정비·점검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관 정비·점검 계획서, 정비기록 및 기관제조자가 수행한 기관상대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해상 시운전 방법
  - 주기관은 한국산업표준 「해상시운전기관부 시험방법」(KS V 0811)에 따라 항속시험, 시동시험 등을, 보조기관은 시동시험 및 부하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 13.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물부령 제174호, 2011. 02. 24

- 「기르는 어업육성법」,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규정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영어조합법인을 추가 함

### 14.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0호, 2011. 02. 24

- 위험해역(아덴만 및 서인도양) 통항 선박에 선원대피처 설치
- 선원대피처의 위치, 구조 설비 등의 요건 규정
  - 선박의 구조·형태 등을 고려하여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
  - 제1출입문 + 제2출입문(총두께 13mm 이상), 내부잠금장치 설치
  - 기타 통풍구 등 개구(開口)에는 폐쇄장치(잠금장치) 설치
  - 근거리통신설비, 위성통신설비 및 3일분 음식료 등

### 15.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36호, 2011. 03. 04

- 시추선 및 플랫폼에 대한 기름배출 요건 완화
  - 시추선 및 플랫폼은 사용 목적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선박의 경우와 달리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가 곤란함
  - 시추선 및 플랫폼에서 해양에 기름을 배출할 경우 스킴 파일(skim pile)이 설치되어 기름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완화

- 소형선박에서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경우 육상의 분뇨 수거차량 펌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외부배출관이나 배출펌프의 설치가 불필요하나 현재는 소형어선의 경우로 한정하여 외부배출관의 설치의무만 면제되어 있음
- 길이가 24미터 미만의 소형선박으로서 외부배출관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수용시설로 배출할 수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외부배출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이러한 선박이 분뇨를 배출펌프 없이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펌프의 설치의무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군함 및 경찰용 선박에 대한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면제
  - 군함 및 경찰용 선박은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반 선박의 오염방지설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 해상에서의 국가안보와 치안유지 활동을 담당하는 군함, 경찰용 선박이나 이를 보조하는 공용선박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배출규제는 적용하되, 기름오염방지설비와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또는 해양사고 시 기름배출 방지를 위한 선체구조 등의 설치 대상 선박에서 제외하도록 함
- 분뇨의 배출해역기준 변경
  - 대부분의 소형선박이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설치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가 되는 해역의 안쪽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처리된 분뇨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의 해역에서만 배출이 허용됨
  -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미만의

- 선박의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처리한 분뇨를 배출하기 위해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소형선박 운영자들의 분뇨배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1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0432호, 2011. 03. 07

- 정신질환자도 보호자 동반 시 유선의 대여·승선 및 도선의 운송이 가능토록 함

## 1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

### ▣ 법률 제10458호, 2011. 03. 09

-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마릿수·체장·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방법·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낚시제한기준을 시·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낚시제한기준을 설정하게 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과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이 해소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
  -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유해한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차단하게 됨에 따라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할 수 있고,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
  -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기상변동 등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기상재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 또는 방파제나 갯바위 및 간출암(干出巖) 등 위험 장소에서의 낚시를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
  -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허가나 면허받은 해수면에서 낚시터업 등을 할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공유수면은 허가를, 사유수면은 임의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수면이 사유수면일 경우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등 그 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 모든 낚시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바다나 바닷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통하여 낚시터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낚시어선업의 신고 등
  - 종전의 「낚시어선업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신고,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출입항신고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낚시어선업법」을 폐지함
  -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의 경우 시장·군수는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 미끼기준의 설정 및 검사 제도의 도입
  -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과다하게 함유된 미끼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검사할 필요가 있음
  -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중에 있는 미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미끼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미끼기준을 설정하고, 유통단속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미끼의 수입과 제조를 차단하게 됨에 따라, 부적합한 미끼로 인한 환경·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함
  - 낚시터업자 등이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받게 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나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18. 수면비행선박기준 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2호, 2011. 03. 10
  - 기준의 목적을 정함
  - '수면비행선박'을 정의함
  - 기준의 적용대상을 'A형 수면비행선박'과 'B형 수면비행선박'에 대해서만 적용함
  - 수면비행선박의 안전시설요건을 별표에서 정함
  - 안전시설요건(별표)은 11개의 장 및 2개의 부록으로 구성함

## 19. 어선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일부개정

- 농림수산물부령 제2011-26호, 2011. 03. 14
  -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를 임의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명확히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함

## 20.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 기준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7호, 2011. 03. 16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09. 4. 23)에 따라 재검토키한을 설정 함
  -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키한 조문 신설

## 2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2011. 03. 17
  -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면 해당 선박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 선박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함

## 22.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물부령 제181호, 2011. 03. 30
  - 어선의 개조 등의 허가 면제대상 확대
    -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 어선소유자의 변경등록절차 간소화
    - 어선의 소유자가 같은 시·군·구 지역 내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신청이 없더라도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어선소유자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통보기관



확대

-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 사항에 대하여 중앙전파관리소에 통보하도록 함
- 선령 5년 미만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의 제2종 중간검사 면제
- 정기검사 시 상가검사 등 유예 대상 확대
  - 정기검사 시 어선소유자로부터 입거, 상가 또는 거선시기의 연기신청이 있고 선체 내부 상태 및 주기관·축계·보조기관 등의 작동 상태를 검사한 결과 양호한 경우 상가 등의 검사준비 유예 대상을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어장관리선으로 확대함
-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및 예비검사 시 효력 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하는 어장관리선 등에 대한 대상 확대
  - 주기관에 대한 개방검사 및 예비검사 시 효력 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장관리선에서 총톤수 10톤 미만 어장관리선으로 확대
-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완화
  -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정비설비기준, 시험 및 자체 검사설비기준 및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일부 완화
-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2011. 03. 30) 당시 어선의 추진 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6조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 규칙 시행(2011. 03. 30) 당시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한 제2종 중간검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2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5호, 2011. 03. 31

- 복합양식어업 중 수하식양식어업의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복합 양식어업 중 혼합양식어업에 대한 양식물의 종류를 확대함

2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22827호, 2011. 04. 04

- 「선박법」에 따른 등록대상 선박 중에서 선내 엔진을 장착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 보트를 수상레저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일반 선박의 경우보다 간단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상레저기구의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와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2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령 제351호, 2011. 04. 12

- 검사대행기관이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 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결정된 수수료의 금액과 산출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수료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함

## 26. 부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3호, 2011. 05. 03
  - 특수한 구조의 부선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 27.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12호, 2011. 05. 03
  - 현장의 적용 등급 명칭 및 용어변경
    - KS규격 개정에 따라 현장 등급 명칭 변경
      - B급→A형, C급→B형, D급 및 E급→C형으로 각각 변경
    - 개정된 KS규격에 따라 현장 관련 일부 용어 변경
      - 힌지식 안덮개 붙이→속덮개 붙이

##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0753호, 2011. 05. 30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 규정 삭제함

## 29. 선박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95호, 2011. 06. 14
  - 특수한 선박·설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하게 규정함

## 30. 선박설비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96호, 2011. 06. 14
  - 총톤수 1,000톤 미만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또는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선박의 기관구역 탈출설비 완화 사항을 명확히 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선교항해당직 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기능 요건을 규정함
  -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현존선에 대하여 풍향풍속계 비치토록 함

## 31.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0799호, 2011. 06. 15
  - 다른 법률에서 제4조의 조종면허를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종면허 특례규정을 마련함
  - 조종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정신질환자 등을 삭제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치고 정하여진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도록 함
  -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장하고, 시험대행 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함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범위를 10해리로 확대함
  - 수상레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의 안전관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소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
- 등록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명확히 함(시행 2011. 12. 16)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시 검사요건을 완화함(시행 2011. 12. 16)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있도록 함(시행 2011. 12. 16)
-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수상레저기구로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도록 함

### 3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0798호, 2011. 06. 15

- 해기사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낚시 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일 경우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제를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함

### 33. 해사안전법 제정

#### ▣ 법률 제10801호, 2011. 06. 15

- 법의 적용범위 확대
  -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영해 및 내수(內水)에만 적용되고 있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처리 또는 배타적경제수역 등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 문제점이 있음
  -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모든 선박과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상에 있는 해양시설에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
  -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상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사안전 관련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및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국제해사기구에서 각 회원국에게 해사안전 전략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및 환류체제 구축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국가해사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해사안전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법령별·부서별로 수립·시행되고 있는 개별 정책을 일원화된 법적 근거 하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제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해양시설 보호를 위한 보호수역의 설정 등
  -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울산 외해 가스탐사시설 등 영해 밖에 설치된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역 설정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해양시설 주위에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호수역을 통항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영해 외 관할해역에서의 해양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적용대상 선박의 합리화
  - 현행법은 경유나 중유를 운반하는 선박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유출사고 시 해양 환경에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원유, 중유,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를 운반하는 선박은 유조선통항금지구역을 통항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경유나 중유 외에 원유나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를 운반하는 선박도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진입을 금지함
  - 원유나 탄화수소유 등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연안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파물의 제거명령 및 비용청구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난파물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하여 난파물 제거명령 또는 처리비용에 대한 재정보증의 요구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이 있음
  -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게 난파물 발생 시 보고 및 제거 의무를 부여하고, 국비로 직접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 비용징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이 신속히 처리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장애물 제거명령
  -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침몰선·폐자재 등 장애물이 방치되고 있어 해상교통에 위험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행정기관이 장애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장애물을 신속히 이동시키거나 제거하여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선박의 내수 통항금지 및 위험화물운반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의무 부여
  - 외국선박의 무허가 내수 통항 금지 및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화물운반선·핵추진선박 등의 영해내 통항 시 안전조치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내수를 항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운반선 등이 영해를 통과할 경우에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도록 함
  - 외국 선박의 무단 정박 등이 방지됨으로써 내수에서 선박의 통항이 원활해지고, 위험선박에 대한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선박위치정보의 공개제한
  - 국제항해선박의 필수탑재장비인 항적기록장치(블랙박스)에 기록된 정보는 정부의 해양사고 조사관이 보유하도록 국제해사기구에서 결의하였으며, 어선·컨테이너선 등의 위치 정보는 선박소유자의 영업비밀과 같이 취급되고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 등을 기록한 정보를 보유한 자는 승선원 구조, 해양사고 원인조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선박위치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금지함

으로써 해양사고의 증거 유출 또는 훼손이 방지되고 선박 영업활동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법률 제10802호, 2011. 06. 15

##### ○ 징계의 집행유예 도입

- 해양사고에 따른 해기사 또는 도선사에 대한 징계는 자격박탈 등의 효과는 있으나, 유사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효과는 적어 현행 징계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
- 해양안전심판원은 징계 중 업무정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이수를 명하면서 징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사고를 유발한 대상자가 징계대신 안전 운항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해양사고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 해양사고 조사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 해양사고 조사사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조사관 동일체의 원칙은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함
- 조사관이 조사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하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조사관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감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 개선

- 개정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국제협약」 따라 국제항해 선박에 의한 중대해양 사고 등이 있는 해양사고 등은 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별조사부의 구성요건을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고 등으로 확대하여 협약에서 정한 조사대상 해양사고를 전담하게 하고, 협약에 따른 조사 결과의 공표, 조사절차의 독립성 보장 등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특별조사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협약 체결국 의무를 이행하고 국제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 원활한 조사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 국선심판변론인제도 도입

- 심판당사자는 심판과정에서 타인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심판 변론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해양안전심판원은 사회적 약자, 빈곤한 자 및 권리보호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권으로 심판변론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선심판변론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선박소유자 등의 준해양사고 통보

- 국제해사기구에서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는 등 준해양사고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로서 그 가치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에게 준해양사고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등

- 준해양사고에 대한 관리규정을 도입함
- 운항실무에서 발생하는 준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서 공유함으로써 유사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약식심판제도 도입
  - 피해가 경미하고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있어서 관련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중대사고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심판이 진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의 구분이 필요함
  - 조사관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의 소환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식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약식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는 심판을 개정(開廷)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판하도록 함
  - 사건의 경중에 따라 심판절차를 구분하여 경미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 약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심판기간의 단축 등 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 이해관계인은 재결의 결과에 따라 자신의 이익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해관계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인은 심판장의 허가를 받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이해관계인이 2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등 심판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이해관계인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해관계인의 심판방해에 대하여는 그 지위를 박탈하게 함으로써 원활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필요적 변론 요건의 완화

- 재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해양사고 관련자의 구술변론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심판 진행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심판원은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장의 허가를 받고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심판장이 원인규명을 위한 소환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약식심판을 행하는 경우에는 구술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함
- 구술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으로써 신속한 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35.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 법률 제10803호, 2011. 06. 15

- 환경관리해역별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및 제3자의 고의만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제외 범위를 명확히 함
- 선박 간의 유류화물 이송작업 시 기름화물이 송계회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인을 받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함
- 선박에 설치된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을 충전하는 경우 충전량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록부를 비치하도록 함
-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항해 시 연료유를 전환할 때 사용하는 절차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준수하도록 함

- 원유 운송 유조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계획서를 비치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긴급 방제를 총괄지휘하며,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 청장 소속으로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오염물질의 방제조치에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되, 자재의 경우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 기름이 둘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제조치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은 방제장비,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방제역량을 강화함
-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평가대상 사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함

-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을 인증 받으려는 경우 기존의 형식승인이 아닌 성능시험을 거쳐 성능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36. 평형수 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일부개정

####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42호, 2011. 06. 29

-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자체 시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명칭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함
- 형식승인시험의 일정과 검사방법, 참여기관 등 형식승인 시험계획서의 세부적인 기재사항을 정함
- 활성물질을 사용하는 평형수관리시스템의 육상시험은 IMO 기본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시기를 정하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공단홈페이지(www.kst.or.kr) 제·개정 법률에 게재하였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고객의 현장애로기술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등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선박안전기술공단 정부대행검사실

☎ 032)260-2288~9 / Fax. 032)260-2235

e-mail : it@kst.or.kr